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(변경신청)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

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(변경신청)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신청인	성 명 (법 인 명)	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			
	주 소		(전화번호 :)				
허가·인가·신고일			년 월 일				
처리 결과	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		면 적(㎡)		금 액(원)		
	사 유						
	근 거		[]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[]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※ 해당란에 √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				
	분할 납부 사항	납부기한	허가전	1회	2회	3회	4회
년 월 일	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
	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액						

※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 기간은 나누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.

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자치구구청장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/ 공개구분		